■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21.1.1>

복지대상자 $\left[\sqrt{}\right]$ 해산급여 N원 신청서

처리기간		4일								
	I									
신청인	성	명	김별님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800121-2123456		급여대상자 와의관계	본인	
	주 소 (시설소재지)		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							
	전화번호		051-519-1234	휴대전화 01		0-1234-1234	전자우편	misuk@korea.kr		
지급계좌	금융기관		부산은행	예금주		김별님	계좌번호	123-456-7890012		
해산자	성	명	김별님	주민등록 ⁽ (외국인등록			800121-2123456			
	주 (시설소자	소 배지)	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							
	해산(예정	정)일	2021 년 09 월 10 일			해산원인	[√]	출산 [] 사산	
						해산인원		(1)	명	
사망자	성	명		주민등록 ⁽ (외국인등록						
	주 (시설소자	소 ^{배지)}								
	사 망	일	년 월	일		사망원인				
통지방법	[] 전자우편(E-mail) [√] 문자메시지서비스(SMS) [] 서면 [] 기타(= ⊦()	
복지대상자로서 해산급여, 장제급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2021 년 09 월 20일										
						신청인	김별님	<i>김별님</i> (서명	명 또는 인)	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• 시장 • 군수 • 구청장 귀하										

1. 해산급여 신청자

- 출생신고서(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)

- 사산시는 의사·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

2. 장제급여 신청자

구비서류

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(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)
-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 (사체의 검안·운반·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)

유의사항

해산·장제급여 지원신청으로 출생·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, 출생·사망신고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출생·사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21.1.1>

복지대상자 $\left[\begin{array}{c} \left[\begin{array}{c} \right] \end{array} \right]$ 해산급여 $\left[\begin{array}{c} 1 \\ \end{array} \right]$ 장제급여

처리기간		4일								
신청인	성 명	김튼튼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5912131-1234567		급여대상자 와의관계	자		
	주 소 (시설소재지)	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								
	전화번호	051-519-1234	휴대전화	010-1234-1234		전자우편	tt1234@korea.kr			
지급계좌	금융기관명	부산은행	예금주		김튼튼	계좌번호	123-456-7890012			
해산자	성 명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					
	주 소 (시설소재지)									
	해산(예정)일	년	월 일		해산원인	[]	출산 [] 사산		
	1,2(10)2	_			해산인원	() 명				
사망자	성 명	김장군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 291231-1234565							
	주 소 (시설소재지)	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								
	사 망 일	2021년 09월 10일		사망원인	병사					
통지방법	[] 전자유	으편(E-mail) [√] 문자메/	시지시	서비스(SMS)	[] 서면	년 [] 기대	타()		
복지대상자로서 해산급여, 장제급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2021 년 9월 15일										
					신청인 <u> </u>	<u> </u>	<i>김튼튼</i> (서명	명 또는 인)		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• 시장 • 군수 • 구청장 귀하

1. 해산급여 신청자

- 출생신고서(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)

- 사산시는 의사·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

2. 장제급여 신청자

구비서류

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(**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)**
-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 (사체의 검안·운반·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)

유의사항

해산·장제급여 지원신청으로 출생·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, 출생·사망신고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출생·사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